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검수업	(주)우주검수공사	최진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로5번길 7, 1105호(삼익세라미아파트)
검수업	씨코리아검수협동조합	진용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23-1, 2층(장생포동)
항만용역업	(주)다원종합개발	박억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2(달동)
항만용역업	(주)가드코리아	한주영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6번길 33, 201호
항만용역업	(주)에스씨엘로지스	윤기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8, 3층 309호(성내동, 강동빌딩)
항만용역업	(주)하나마린	이황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연암길 88, 1층
항만용역업	한국프로텍	서효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02번길 8, 1005호(좌동)
선박연료공급업	다보마린(주)	한동부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09(2층)
선박연료공급업	(주)골드오션	김현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7, 2층
선박연료공급업	(주)가람해운	김영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3-12, 602호(초량동, 동서빌딩)
선박수리업	시스테크(주)	강진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현대중공업 내시스테크
선박수리업	(유)해동엔지니어링	곽영갑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79번길 33
선박수리업	한국프로텍	서효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02번길 8, 1005호(좌동)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선용품공급업	한국해상무역(주)	신권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6-12
선용품공급업	(유한)해동엔지니어링	곽영갑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79번길 33
선용품공급업	창녕축산	김진극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5
선용품공급업	정화부식	손정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62-1
선용품공급업	대송컨테이너항업	최상식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716번길 1(황성동)
선용품공급업	마린토탈	김동우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59
선용품공급업	(주)제이에스글로벌	김정근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로 34-1(약사동)
선용품공급업	퀵마린서비스	김희경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25번길 18, 103호(삼산동)
선용품공급업	(주)다원종합개발	박억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2(달동)
선용품공급업	(주)파트코	김화식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167, 2층(방어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 근거
검수업	(주)우주검수공사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1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검수업	씨코리아검수협동조합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1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항만용역업	(주)다원종합개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항만용역업	(주)가드코리아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항만용역업	(주)에스씨엘로지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항만용역업	(주)하나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항만용역업	한국프로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박연료공급업	다보마린(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박연료공급업	(주)골드오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박연료공급업	(주)가람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법적 근거
선박수리업	시스테크(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박수리업	(유)해동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박수리업	한국프로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한국해상무역(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유한)해동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사업정지 6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창녕축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정화부식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대송컨테이너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마린토탈	사업수행실적 없음 (5차 위반)	사업정지 6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주)제이에스글로벌	사업수행실적 없음 (5차 위반)	사업정지 6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퀵마린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주)다원종합개발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사업정지 6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선용품공급업	(주)파트코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시행령 제11조 법

####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참조)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다. 다만,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을 한 때에는 우리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전화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라.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마. 등록취소가 예정된 업체인 경우 청문대상이므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5. 의견제출 방법

-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매암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1층)
  - 팩스 : 052-228-5569
  - 정보통신망 : youandme0618@korea.kr
-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전화 052-228-5611)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 6. 대리인에 관한 사항

- 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나.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붙임 제2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붙임 제3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붙임 제4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7. 의견제출 기한 : 2026. 5. 20.(수)까지

## 8. 청문일시(청문대상에 한함) : 2026. 5. 20.(수) 14:00

- \* 공시송달을 확인한 청문대상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로 연락하여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기타사항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나.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052-228-56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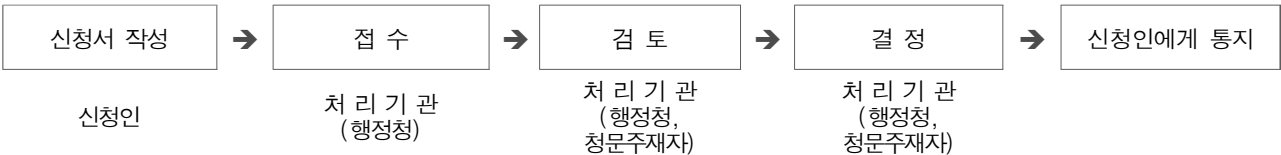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붙임 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표자선정  
[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표자 ( [ ] 해임 [ ] 변경) 통지서  
[ ] 대리인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